

알아두면 유익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

2018

관 세 청
특 수 통 관 과

목 차

I. 통관 일반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2
3.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3
4.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시 면세받는 방법은? 4
5.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교환·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6.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과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6

II. 개별 물품 통관 방법

1.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7
2.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 8
3. 전자제품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요? 9
4. 농림축수산물은 입국시 얼마나 가져올 수 있나요? 9
5. 향수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
6. CITES 협약 대상물품 통관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0
7. 외국 화폐 반입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11
8. 담배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1
9. 주류(술)의 면세기준 및 초과시 어떻게 과세하나요? 12

III. 기타 FAQ

1.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요? 13
2. 텍스리펀드 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요? 14
3. 여행자휴대품 관세납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5
4. 여행자 휴대품으로 모든 물품을 가져올 수 있나요? 16
5. 물품을 통관하지 않고 세관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16
6. 외국에서 거주 후 한국으로 이사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과 똑같이 과세하나요? 17
7.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밀수범으로 처벌받나요? 18
8. 간이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19

I. 통관 일반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과세통관만 가능하며,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US\$6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구분	면세물품	면세범위	비 고
기본 면세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US\$600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상용물품, 수리용품·건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US\$600 공제 불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별도 면세	술	1병	▪1ℓ이하 & US\$400이하
	담배(궐련인 경우)	200개비	▪가격제한 없음(단, 한종류만)
	향수	60mℓ	▪용량제한만 있음(수량무관)

2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동반가족이란?

-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3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선물받은 물품,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의 전체 구매가격 합계액이 US\$6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출국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시 면세받는 방법은?

-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반출 확인증’ 을 받아 두면 입국 시 증명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5**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교환·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국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입국 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반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면세점 구매물품의 반품은 자진신고 후 세관에 유치된 경우에 가능하며, 이미 휴대품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로 반입이 완료된 물품의 경우 반품이 불가합니다.

6**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과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II. 개별 물품 통관 방법

1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6병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선물용 등 포함)

○ 자가사용 인정기준

종 류	자가사용인정기준	비 고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 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
의약품	총 6병 (6병 초과인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참고] 건강기능식품 이란?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먹는 형태)을 말함.

2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

-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정보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의약품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안전정보 전문 채널!

통합검색 [] Q 검색 [] 메뉴 한눈에 보기 [+]

인기검색어 ▶ 생산실적보고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회수제품

식품·안전정보 | 위해·예방정보 | 건강·영양정보 | 식품전문정보 | 이슈·뉴스·홍보·교육

이런식품
드시지 마세요

불량식품
신고하시겠습니까?
1399

업체, 제품 정보가
궁금하세요?

우리동네
음식점은 안전할까?

우리회사
안전관리서비스

전문정보관

- 식품공전
- 식품안전관리체계
- 식품안전법령집
- 식품행정업무안내
- 전문DB관
- 용어사전

3**전자제품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요?**

-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4**농림축수산물은 입국 시 얼마나 가져올 수 있나요?**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단,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

품목(예시)	면세통관	검역
참기름	5kg	-
참깨	5kg	식물검역
육포	5KG	축산물검역
장뇌삼(산양삼)	300g	식물검역
상황(차가)버섯	300g	식물검역
녹차	5kg	-
보이차 또는 우롱차	5kg	-

5

향수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6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6

CITES 협약 대상물품 통관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CITES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CITES 수출승인서 또는 허가서를 입국전 미리 구비하여 국내 CITES 허가기관에서 수입승인서 또는 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예 : 악어가죽제품 등)

[참고] CITES 협약 이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93년 가입)

7

외국 화폐 반입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 여행자가 US\$ 1만불 초과 외화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한 후 세관직원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반입한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8

담배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껌련 200개비, 엽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면세 처리됩니다.
-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6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의 종류	종류별 면세범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껌련 • 엽껌련 • 전자담배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개비 • 50개비 • 니코틴용액 20ml • 연초 고행물 110g • 250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기본면세범위(US\$600)와는 별도로 면세 • 수량기준으로 가격제한 없음 • 한 종류만 해당 •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는 연초 고행물 적용

9**주류(술)의 면세기준 및 초과 시 어떻게 과세 하나요?**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L이하로서 US\$400 이하의 것, 1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6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예시1]

- 2L 용량(US\$300), 주류 1병 : 1L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US\$300)에 대하여 과세

[예시2]

- 750ml (US\$500) : US\$400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US\$500)에 대하여 과세

III. 기타 FAQ

1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요?

□ 가격할인이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면세점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구매가격을 거래 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하며, 이 경우 카드사 제휴 할인 등 일반적으로 적용된 할인은 인정되지만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적립금 등에 의한 할인 등은 불인정됩니다.

- 면세점 가격 할인의 인정 여부(인터넷 면세점 포함)

가격할인 인정(할인후 가격 인정)	가격할인 불인정(할인후 가격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 제휴할인 • 면세점 정규세일 (인터넷으로 공개된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은권, 쿠폰 • 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에게 특별하게 제공된 할인이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된 할인이므로 거래가격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 •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적립금 등에 의한 할인

2

텍스리펀드 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요?

-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 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 Tax Refund 제도란?

-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

3

여행자 휴대품 관세납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관세납부 방법은 직접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 종류	납부 방법
직접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지서를 가지고 국고수납 대리점 (은행 등)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
인터넷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납부 ⇨ 관세납부화면 (은행별로 이용경로 다름)
현금카드납부 [입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장 은행환전소에서 현금카드로 납세 의무자 계좌에서 고지세액을 출금한 후 세금 납부 타행카드 수수료 有
가상계좌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지서상에 가상계좌에 입금(농협) 폰뱅킹, 인터넷뱅킹 이용가능
신용카드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명의로 카드만 이용가능 회원가입, 공인인증 필요 국내 전 카드사 납부가능 (카드사별로 카드종류 제한)
사후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관공무원에게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 번호나 여권번호 등 정보 제공 후 신청 자진신고자 중 납부세액 200백만원 이하 (체납자, 우범여행자 등 제외)

4

여행자휴대품으로 모든 물품을 가져올 수 있나요?

- 관세법에서 정한 아래 수출입금지물품은 통관할 수 없습니다.
-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5

물품을 통관하지 않고 세관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 여행자 휴대품은 세금납부 후 물품을 찾아가는 것이 원칙이며, 미납물품은 반출할 수 없으므로 유치합니다. 또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통관에 필요한 허가나 승인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하므로, 입국시 이를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유치(세관에서 보관)합니다.

외국에서 거주 후 한국으로 이사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과 똑같이 과세하나요?

- 이사자 등이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경우 면세할 수 있습니다.
- 이사자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이란,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제외)

7**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밀수범으로 처벌받나요?**

-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8

간이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간이세율 적용방법

- ①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1,000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20%)적용
- ② 물품의 합산총액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하되,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부터 적용

□ 예상세액 조회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또는 투어패스(m.tourpass.go.kr)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Korea Customs Service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logo and search options. Below that, a main banner features a smartphone displaying the 'Personal Importation' (개인통관고유부호) app and a text box that reads '해외직구! 금액 상관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주세요.' (Overseas Direct Purchase! Submit your personal importation number regardless of the amount).

In the 'Service' (조회업무서비스) section, the 'Estimated Tax Inquiry' (예상세액조회) ic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Other icons include 'Photo/Document Info', 'Regulation', 'Import/Export Declaration', 'Export/Import Declaration', and 'Traveler's Declaration'.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ctions for 'Notice' (전체), 'Public Information' (공지사항), 'News' (보도자료), 'Customs Notice' (관세청공고), 'Administrative Notice' (행정예고), and 'Latest Regulations' (최근제·개정 법령). The 'Administrative Notice' section lists various customs-related notices with dates.

There are also sections for 'Monthly Trade Statistics' (이달의 통관실적), 'Foreign Trade Statistics' (남북교역 실적), 'Customs Clearance Information' (관세 환율정보), and 'Origin Determination' (원유형군 수입가격).

At the bottom, there are links for 'Newspaper' (혁신광장), 'Information Request' (정보공개 청구/확인), 'Public Auction' (공매), and 'User-Specific Information' (사용자별 업무안내). There is also a 'National Customs Service' (국민관심서비스) section with icons for 'Personal Importation', 'Customs Clearance', 'Personal Importation', 'Overseas Direct Purchase', 'FAQ', and 'E-books'.